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25노364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 A 2.나. B	
항소인	검사	
검사	문호섭(기소), 손찬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파트원 담당변호사 박정교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해명 담당변호사 이창현, 이예건 (피고인 B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5고합288 판결	
판결선고	2026. 4. 30.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창작한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저작권재산권 행사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며,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선고유예(유예한 형 :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자신들이 스토리·콘티 작가임을 알리지 않고 피해회사와 차명으로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겸직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위 계약에 따라 스토리·콘티를 창작하였고(이하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창작한 스토리·콘티를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 피해회사로부터 저작권료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들에게 임무위배의 인식 또는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나 의사, 즉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0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업무상저작물로서 예외적으로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가 저작자로 된다. 업무상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 등에 관하여 기획할 것,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③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④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일 것, ⑤ 계약 또는 근로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서 출판사업본부 만화콘텐츠개발팀 편집자로서의 업무 범위는 출판 도서에 대한 기획안 작성, 작가 계약 및 원고 발주·수급, 작가가 작성한 글·그림에 대한 피드백 및 수정, 홍보자료 작성 등으로서 스토리·콘티 창작 업무는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저작물 창작 업무는 피고인들의 통상적인 업무로 기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상사였던 E는 피고인들이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에 이 사건 저작물 창작작업을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신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담아 이 사건 저작물을 창작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채용될 당시 제출한 서약서 (4)항에는 "저작권법 제9조에 의거하여 귀사에서 업무상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 기명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저작재산권(복제·배포·발행권) 등은 영원히 행사하지 아니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서약서 규정은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해회사 내부규정에는 저작자에게 지급될 저작권 사용료의 적정 수준이나 지급 형태 등에 관한 기준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저작물 사용 대가로 피해회사로



부터 받기로 한 인세율(도서 정가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부수를 곱한 금액)은 다른 작가와 피해회사 사이에 적용되는 수준이었다. 피해회사는 2009년~2010년경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도서별 비용을 점검하기도 하였으나 점검 이후에도 기존 인세율 수준과 저작권 사용 계약 형태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인세율이 문제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회사 직원인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처럼 자신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음에도 저술 활동을 한 경우 보상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전례는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서의 스토리·콘티 작가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들과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피고인들과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인세지급 형태의 계약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1회 지급하고 저작권을 양수받는 매절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로부터 수령한 저작권료가 과다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겸직 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피해회사에 사실대로 이 사건 저작물의 작가임을 밝혔다면 피해회사가 피고인들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더 낮은 수준의 대금으로 정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E와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저작물을 창작하여 해당 도서의 질이 떨어졌다거나 그로 인하여 판매량이 감소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들은 마감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신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 사건 저작물을 창작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대가로 저작권료를 수령한 점, 피



고인들의 창작활동으로 인해 제때 도서가 출간되어 피해회사가 그에 따른 영업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액 또한 다른 도서들과 비교하여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자신들이 스토리·콘티 작가임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겸직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 창작에 따른 저작권료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당시 임무위배의 인식 또는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당심의 판단

가) 이 사건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이라 볼 수 없다.

'업무상저작물'은 법인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하고,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 이처럼 저작권법은 법인 등 내부에서 여러 사람의 협동 작업에 의해 저작물이 창작되는 실태를 고려하여, 저작권은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연인이 취득한다는 '창작자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업무상저작물에 한하여 법인 등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인이 아닌 법인 등이 저작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예외적인 규정인 만큼, 저작권법 제9조의 성립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취지 참조).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9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작자가 법인 등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1호에 따른 '저작자'로서 같은 법 제10조의 저작권을 행사



할 수 있는바,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피해회사와 사이에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인세를 수취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학습만화를 제작하기 위하여는 통상 만화에 담길 정보를 대본 형태로 창작하는 스토리 작가('글 작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스토리 작가가 써온 대본 같은 글을 그림 작가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페이지 구성, 만화의 컷 구성, 인물의 표정이나 동작에 관한 연출, 전반적인 공간과 정보에 대한 연출 등을 밑그림으로 그리는 콘티 작가, 이를 만화로 그려내는 그림 작가의 협업 또는 겸업으로 이루어진다. 피해회사는 그림 작가에게는 통상 4~8%, 콘티 작업을 포함한 스토리 작가에게는 3~4%의 인세율을 적용하여 출판권 계약을 하는바, 이 사건 저작물이 사용된 학습만화에 대한 일부 '출판권 설정 및 기타 저작권 사용 계약서'에는 저작물의 종류가 글 저작물로 특정되어 있기도 하다. 이 사건 저작물이 사용된 피해회사 출간 학습만화들에도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저작물은 피고인들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직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물론 출판사업본부 만화콘텐츠개발팀 소속 피고인들의 업무 중 작가에 의해 작성된 글·그림 원고에 대한 피드백 및 수정, 표지 및 본문 구성, 교정, 데이터 마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별도의 작가가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한 원고를 수정·교정하는 업무를 의미할 뿐, 피고인들이 스스로 스토리 작가가 되어 글을 작성하는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콘티 작업 역시 앞서 본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출판권설정계약의 대상이 되는 작업으로서 출판사 직원이 수행하는 제출된 원고에 대한 수정·편집 작업과는 구별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저작물을 창작하게



된 것은 E의 부하 직원 중 피고인들만 스토리 작성과 콘티 작업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E가 부탁하게 된 것일 뿐, 만화콘텐츠개발팀 소속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저작물을 창작하기 시작한 것도 아니었다.

③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 아닌 이상 다른 요건들의 성립 여부를 살필 필요가 없으나, 피고인들이 입사하면서 피해회사에 제출한 서약서 중 저작권 포기 조항은 업무상저작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하여까지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 피해회사에게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적절히 실시한 사정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회사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A은 2003. 4. 21.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06. 11. 6.경 BC팀 대리로서 승진하였고, 2013. 7. 1. 출판기획팀 과장, 2013. 12. 1. 만화콘텐츠개발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5. 11. 10. 퇴직하였다.

피고인 A은 상사였던 E의 부탁으로 AS 시리즈 중 AT, AQ, AP, AR, AC, Z, AU 등 7권에 대하여 스토리·콘티를 창작하였고, 2003. 10. 27.부터 2007. 3. 30.경까지 피해회사와 사이에 차명을 이용한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저작활동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1년 내지 2012년경 적당한 콘티 작가를 찾을 수 없던 E의 부탁으로 AV(2011. 9. 19.경 출판권 설정계약), AE 3편(2012. 1. 9.경 출판권 설정계약), AJ 1 내



지 6편(2012. 1. 18. ~ 2013. 7. 15. 각 출판권 설정계약) 등 8권에 대하여 콘티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 재직 기간 중에도 외주작가로서 여러 출판사에서 스토리 작가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외주작가로서 BD, BE, BF, BG 1, 2편, BH 등 6권의 스토리·콘티를 작성하여 자기 명의로 피해회사와 사이에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 퇴사 이유 중 AW로 E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H 시리즈의 스토리·콘티 작업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실제 저작자 BI과 함께 저작자로 매절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저작권 양도금을 나누어 받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실을 들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피해회사 재직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업무 시간 이외에 스토리·콘티 작업을 하였고, 외주작가로서 피해회사를 비롯한 출판사들과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처럼 자신이 작업한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피해회사로부터 다른 작가들과 유사한 수준의 인세를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을 뿐,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까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 B은 2007. 7. 1.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10. 5. 17. BC팀 대리, 2014. 4. 1. 만화콘텐츠개발팀 과장, 2019. 4. 1. 만화콘텐츠개발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4. 6. 해고되었다.

피고인 B은 X, AD, BJ(N 1, 2편) 등 4권에 대한 스토리·콘티, AE 10, 11편 등 2권에 대한 콘티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E의 부탁에 따라 업무시간 이외에 이 사건 저작물을 창작하였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을 뿐,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까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유죄가 인정된 H 시리즈의 경우 10권 씩 5회로 나뉘어 총 50권이 출간되었는데, 피고인 B은 실제 저작자인 BI이 제출한 원고를 출판사 직원으로서 수정, 편집하였을 뿐 스토리·콘티 작업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권 당 대금 2,500만 원 중 BI이 2,200만 원, 피고인 B이 300만 원을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는 각 매절계약을 피해회사와 체결하고 그 양도금을 E와 나누어 가졌다는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행위 태양 및 가벌성에 있어 준별되기도 한다.

③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상의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을 생기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731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7716 판결 등 참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 없이 단지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더 낮은 수준의 대금으로 정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627 판결).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저작물이 사용된 학습만화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인기에 판매되고 있고, 피고인들이 수취한 저작권료가 통상의 수준을 상회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당시 피해회사에는 직원들의 '업무상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관하여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건강, 성행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2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_____

 판사 박정운 _____

 판사 김도형 _____